

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요약

- **(목적)**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시 실질 책임자*를 처벌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,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유도

*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 및 안전 확보를 위반한 법인·기관의 경영책임자

- **(보호대상)** 산업재해를 ①중대산업재해와 ②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

- **(산업재해)** 종사자가 주요 보호대상이며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계약형식(도급·용역·위탁 등)에 관계없이 대상에 해당

- **(시민재해)** 사업장에서 생산, 제조, 유통 중인 '원료나 제조물'의 이용자, 사업주가 운영하는 '공중이용시설·교통수단'의 이용자가 주요 보호대상

※ 다만, 상시근로자 10만 미만 소상공인, 교육시설,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제외

※ 과거 '삼풍백화점 붕괴사고', '성수대교 붕괴사고', '가습기 살균제 사건' 등이 시민재해의 예

- **(의무주체)** 사업주 또는 사업을 대표·총괄하는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

※ 개인사업주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기업,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

- **(의무)** ①인력·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, ②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, ③정부·지자체의 시정 요구 이행 조치, ④안전·보건법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

- **(처벌수위)**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, 법인 및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여

<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>

중대재해 종류	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	법인(양벌 규정)
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(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)	50억 원 이하 벌금
다수의 부상자(6개월 이상 치료) 또는 직업성질병자 발생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	10억 원 이하 벌금

※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,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벌금 납부 부담 가능 단, 법인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·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 가능

- **(징벌적 손해배상)** 중대재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손해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최대 5배 까지 부여

- **(적용예외)**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*은 중대산업재해 미적용
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